# 검토의견서

【마을담당관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

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위원 위촉시 사회적약자의 참여 기회 보장 (안 제9조제5항)

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"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를 "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"로 개정

## 나, 직제 개편에 따른 간사 변경 (안 제9조제6항)

위원회 간사 "예산업무의 담당 부서장"을 "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"으로 변경

#### 다.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임기 개정 (안 제10조제1항)

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

#### 3. 구의회 수정

#### 가. 수정내용

수 정 전	수 정 후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<u>있다</u> .	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<u>1년</u> 으나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.
부칙 제2조 (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 (연임을 포함한다)된 위원의 잔여임기는 제10	부칙 제2조 (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되어 재임 중인 위원을 포함하여
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.	

#### 나. 검토결과

- 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